



##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

금액  
제한없이  
제공가능

### 일반인

(적용대상 아님)

- 친구, 가족,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
-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
-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

###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

-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동창회·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

100만원  
이하  
제공가능

### 직무 관련 없음

- 친구,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

5만원  
이하  
제공가능

### 직무 관련

(원활한 직무수행,  
사교·의례  
목적이 인정됨)

-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
- 각종 간담회,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
-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

제공  
불가

### 직무 관련

(원활한 직무수행,  
사교·의례  
목적이 인정안됨)

- 상시적으로 평가·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(학부모)이 드리는 선물
- 입찰, 계약,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
- 인사·평가,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

#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

초·중·고등학교  
학생 및 학부모

**1**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?

**A**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**2**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?

**A**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.  
※ 공무수행사인은 '공무수행에 관하여'만 청탁금지법(부정청탁, 금품등 수수 금지)이 적용됩니다.

**3**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·감독에게 지도학생(학부모)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?

**A** 지도학생(학부모)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
**4**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?

**A**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.

**5**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, 기프트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?

**A**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
**6**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(학부모)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? **X**

**A** 학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  
※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
**7** 학생(학부모)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? **X**

**A** 현재 담임교사,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.

**8**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? **X**

**A**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,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.

**9**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? **X**

**A**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.

**10** 졸업식날 학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? **X**

**A**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


##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

### 선물의 상담

● 청탁방지담당관과 **상담**

※ 가액, 사교·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

### 선물의 신고

● 소속기관장에게 **신고**

※ 국민권익위원회,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

### 선물의 반환·인도

●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**제공자에게 반환**

●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**인도**

※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

### 조사 및 조치

● 위반 여부 **조사**

●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**통보**

● 징계, 과태료 부과 **통보**

#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

초·중·고등학교  
교직원

1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다?

A 기간제교사는 교원(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)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.

2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과자 등의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?

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줘도 됩니다.

3 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, 기프트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?

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.

4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,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?

A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·인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  
※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 입장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
5 학생(학부모)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?

A 현재 담임교사, 교과목 담당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.

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(학부모)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?

A 학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  
※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
7 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?

A 동료 교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받아도 됩니다.

8 다른 학교로 옮긴 담임교사는 이전 학교의 학생(학부모)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?

A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(학부모)과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(100만원 이하)을 받아도 됩니다.

9 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?

A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전별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  
※ 다만,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.

10 담임교사는 졸업식날 학생들(학부모)이 제공하는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?

A 졸업식날 학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상 받아도 됩니다.